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적용사례

**어음, 법정지급일
초과기간 할인료 지급**

이번 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사안을 사실조사에 의해 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조정에 적극 응하지 않아 합의 조정이 성립되

하도급공정거래 적용 사례

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사례를 소개한다.

피심인인 ○○개발(주)는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주)○○산업은 같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 받은 자로서, 본 건 하도급 거래에 있어 동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주)○○산업과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지급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그 초과한 날(기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할인률 : 연 13.5% 사건 당시의 할인률, '94.4.1부터 12.5% 적용) ○○○천원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인 (주)○○산업에게 증액 조정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천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그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한 날(기산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다 연리 13.5%의 할인률을 적용하되 계산된 어음할인료 ○○○천원을 부담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인정된다.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하도급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

피심인은 (주)○○산업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발주자로부터 그가 받은 동일한 사유로 (주)○○산업에게 건설위탁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되므로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 조정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자신이 시행한 ○○직할시 ○○구청청사 신축공사중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산업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천원을 (주)○○산업에게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심인에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 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액 ○○○천원을 (주)○○산업에게 조속히 지급할 것을 주문한다.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이행하여야 하며 불응시에는 검찰에 고발조치 되도록 되어 있다.